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2024. 2.

행정안전부

적 용 범 위

- 본 종합지침은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함

사업 지침 목차

Ⅰ. 사업 개요 ····· 1

Ⅱ. 세부 사업 내용 ····· 2

Ⅲ. 운영체계 및 사업주체별 책무 ····· 3

Ⅳ.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 5

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 11

Ⅵ.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관리 ····· 15

Ⅶ.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 및 운영 ····· 17

Ⅷ. 참고자료 ····· 19

Ⅰ 사업 개요

□ 상품권 개념 및 목적

○ **(개념)**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목적)**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 운영

○ **(법적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 **(지침 마련)** 예산 집행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고려사항* 안내

* 보조율 준수, 가맹점 등록 기준, 1인당 구매한도·보유한도 설정 등

○ **(종류)** 지류형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4년

○ 사업주체 :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보조

□ 지원 제외 대상

○ 상인회, 은행 등 민간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 법령위반 등 행안부 장관이 지원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Ⅱ 세부 사업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사업내용)**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보조**

○ **(지원대상)**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 주민 생활권 고려 및 국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광역시의 區와 道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국비지원 無

○ **(지원예산) 국비 3,000억원**('24 본예산)

○ **(지원방식)**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도록 당초 전액 일반 할인비용으로 지원되었던 예산을 **①일반 할인비용(2,500억원), ②정책사업 할인비용(200억원), ③재난대응 할인비용(300억원)으로 나누어 지원**

❶ 일반 할인비용 지원(2,500억)

- **(할인율·국비지원율)** 지자체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자체별 차등 적용**

	일반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24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서울, 경기 성남·화성)
할인율	할인율 7~10%	할인율 10%	할인율 자율
국비 지원율	**국비지원율 2%** 지방비 부담 5~8%	**국비지원율 5%** 지방비 부담 5%	국비지원 없음

* 인구감소지역과 '24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지자체

**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를 기준으로 하되, 광역시의 자치구·군(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및 미발행 지자체(강원 양양군)는 제외

- **(지원규모) 재정력**과 **균형발전 지원 필요성** 등을 **중점 고려**해 **국비지원 발행규모 결정(8.8조원**잠정**)**

❷ 정책사업 할인비용 지원 예산(200억)

- **(지역물가안정 지원)**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상품권 사용 시 추가 할인**(5% 이상)을 하는 **지자체**에 **할인비용 일부 지원**(국비 3%, 지방비 2% 이상)

- **(지역문제해결 지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 시 추가 할인**(5% 이상)하는 **지자체**에 **할인비용 일부 지원**(**국비 2%**, 지방비 3% 이상)

  * 예시 : 산후조리원, 구도심 상권, 지역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시 캐시백 추가 지급

❸ 재난대응 할인비용 지원 예산(300억)

- **재난 발생 등으로 소상공인 피해 발생 시**, 빠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 할인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추가 할인비용 지원**(전액 국비 지원)

  * 예시 :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할인율 추가 지원 등

※ 정책사업 지원 및 위기대응 지원 예산은 정책사업 수요, 재난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상호 간 예산 조정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잠정)

○ **(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특교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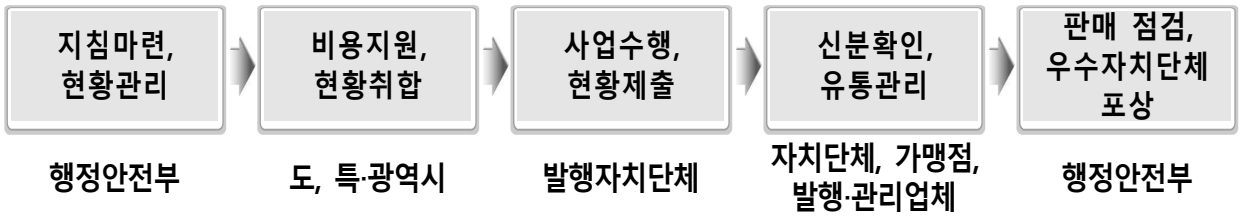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등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운영 방향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여 모범이 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원

○ **(평가방법)** 지자체별 사례발표, 평가단을 통한 정량·정성평가 실시

※ 우수사례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계획 별도 통보 예정(3월 중)

Ⅲ 운영체계 및 사업주체별 책무

❖ 운영체계



□ 행정안전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현장 점검

- 발행실적 등 반기보고서 확인, 부정유통 등 관리·감독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유권해석, 제도 관련 의견수렴 및 법령 개정

○ 국비 정산·반납 절차 진행, 우수 자치단체 포상

□ 도(서울시 포함)

○ 관할 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제도 등 총괄 관리 및 지원

- 시·군·구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배분기준 마련(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지원예산을 시·군·구 간 재조정 등)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현황 취합, 시·군·구 의견수렴

- 부정유통 단속 역량강화교육 진행, 관할 시·군·구 부정유통 단속·조치 내역 점검 등 관할 시·군·구 부정유통 관리 총괄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 자치단체(시·군·구)에 예산 지원

○ 예산 배분기준, 조정 내역, 발행현황, 자치단체 의견 등 행안부 제출

□ 상품권 발행 자치단체(광역시, 시·군·구 등)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 적정 수행

○ 발행 규모 결정, 발행·판매·환전, 상품권 폐기 등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현황 관리 및 제출

○ 지원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

○ 가맹점 모집·등록, 휴·폐업 확인 등 지속 관리

- 가맹점 등록 여부 결정, 등록 현황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공개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적정관리, 안전장치 마련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현장 수시 점검 및 관련 시스템 도입 등 노력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상품권 발행형태 전환(지류형 축소, 後캐시백형 운영),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등 관리 시스템 도입·구축 등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이벤트 등 추진

□ 발행·관리 업체

○ 적정 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거래 모니터링 등 지속 관리

○ 상품권 판매, 환전 과정에서 본인확인, 개인정보 관리·유출 방지

○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등 부정유통 방지 시스템 도입·구축 등

○ 가맹점 정보 공개 등 소비자 편의 제고

Ⅳ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1. 발행 :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발행·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책임하에 관리**(법 §4-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역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 지역사랑상품권 종류, 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발행신고서와 지역사랑상품권 견본, 발행계획 등을 행안부장관에게 제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책임 아래 상품권을 관리**하여야 함

- 지역의 경제규모·인구구조 등을 반영한 발행규모 결정, 예산 범위 내 적정한 할인율 설정, 가맹점 등록·관리, 운영자금 관리,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현장점검 등

2. 발행위원회 : 주민의견 반영 필요시 운영 가능

□ **주민이 참여하는 발행·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근거)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발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 **논의·결정 가능**

* 가맹점 등록기준, 발행규모 및 권종(5만원권 등) 결정, 할인율·구매한도·환전한도 설정, 활성화 시책(지역축제, 복지 포인트 지급 등) 마련 등

-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지원, **정책 현실성 제고**

< 운영 사례 >

□ **00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

- 조례에 근거, 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 공개모집 필요
- (구성) 주민·가맹점·판매대행점 등 이용자 대표, 시민단체·전문가, 지방의회, 공무원 등
- (역할) 발행 및 운영, 활성화 시책 수립, 효과 분석 연구 등 심의·의결
- (안건) 가맹점 등록기준 수립, 발행규모 및 권종 기준 마련(예, 추가발행 및 5만원권 발행 결정) 등

3. 명칭 : 지역화폐 X, 지역사랑상품권 O

□ **"지역사랑상품권" 명칭 사용**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명칭을 선정·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상품권의 **법적 성질** 및 **법정 통화와의 혼동 방지**를 위해 **'화폐' 표현은 지양**

○ 주민 혼동을 막기 위해, **운영대행사 및 플랫폼 명칭은 상품권에 사용 자제**

※ (예시) OO페이 상품권, OO은행 상품권 등

4. 기재사항 : 조례로 규정, 권면금액·발행권자 등 명시적 기재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기재사항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조례로 규정**(법 §4-④)

○ 단,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권면금액, 발행권자** 등 필수적인 사항을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지류형** 상품권은 **명칭, 권면금액, 발행권자, 발행일, 일련번호, 유효기간, 환불 및 환급기준** 등을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구매 시 이에 대하여 **안내·고지**하여야 함

○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은 관련 정보를 **앱(App) 내 공지사항, 팝업** 등을 활용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하기 쉽게 안내**하여야 함

5. 유통지역 : 소관 행정구역, 필요시 달리 정할 수 있음

□ **유통지역**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법 §4-③)

○ 단, 필요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생활권·상권이 인접한 지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고려 필요

< 조정 사례 >

□ **충북혁신도시 상품권 통합 운영 (음성군·진천군)** ※ '21년 우수사례 선정

- 혁신도시가 두 군의 행정구역 모두에 형성되어 생활권 중복 →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생활권 단위의 상품권 운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업무협약* 및 **조례 개정**(유통지역 변경) → **지역사랑상품권 공동 유통** ('21년) → 주민편의 증대

* 혁신도시 내 음성 - 진천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운영을 위한 협약 ('20.12.)

6. 기금 : 설치 가능, 조례로 규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법 §16)

○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상품권 발행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기금을 설치하여 할인비용, 발행비용 및 수수료 등 제반 비용에 사용 가능

○ 조성·용도 및 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7. 활용 : 각종 수당 등 대체 지급 가능

□ **현금성 지원 대체** 등 他 **정책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예시) 농민수당·아동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 이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책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에 따름**

< 법령 사례 >

「아동수당법」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③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0조(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8. 운영 위탁 : 발행·관리 업무의 일부 위탁 가능

□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위탁 가능**(법 §18)

○ 상품권 발행·판매·환전, 가맹점 관리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단, 상품권 운영자금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등 책임있는 관리 필요

○ 상품권이 적정 유통되도록 위탁업체를 지속 관리하여야 하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위임·위탁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법 §19)

- 개인의 동의를 받고 목적·이용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폐기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참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 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 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상품권 판매를 위해 **판매대행점**과 **협약 체결**(법 §6)

○ 판매대행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제출하여야 함

9. 운영자금 : 지자체장 책임하 지자체가 직접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책임 아래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법 §4의2)

○ 상품권 운영자금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자치단체 금고에 설치·운영**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운영자금을 그 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좌 운영 가능**

○ 운영자금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 의한 **주기적인 계좌 확인(주1회 이상)** 및 **부정행위(계좌 유용·운영자금 도용 등)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예) □□시 조례 제00조(운영자금 관리의무)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운영자금 중 **이자수입·낙전**은 관련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귀속하며(세외수입), 차년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활용**

※ (예) □□시 조례 제00조(이자수익 등의 처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차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 등**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안부에 제출**

10. 데이터 :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 정책 활용, 민간 개방

□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법 §15-③)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

- 이를 위해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국 단위의 통일적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추진,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대행사는 이에 **적극 협조**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대행사 등으로부터 **가맹점 데이터 및 상품권 결제 데이터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 위탁 계약 시 관련 사항 명시** 필요

- **운영대행사는** 데이터 개방사업 관련 **자료 공유 요청시 적극 협조**하고, 보유 데이터 질 향상을 위해 **보유 데이터에 대한 주기적 관리 필요**

□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 **판매대행점의 정보** 및 **가맹점 등록현황**을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법 §4의2, §6, §7)

□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품권의 **발행, 폐지 및 변경 사항을 행안부에 신고,** 상품권 **발행실적을 반기별로 행안부에 제출**하여야 함(법 §5, §14)

11. 실태조사 : 필요시 수행, 자료 제출 협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이용 현황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법 §15의2)

○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함

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1. 가맹점 등록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

□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맹점을 등록하고 지속 관리하여야 함**(법 §7-①)

○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한 자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적합한지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법 §7-③)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2. 등록기준 : 연 매출액 30억 이하, 지자체별 업종 제한 병행

□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법 §7-②)

○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등록을 거부**

- **(공통기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 허용**

< 공통기준 적용 예외 >

▶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
* (예시) 농민수당·아동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정책발행 상품권**

▶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 지자체가 '실질적 판매자'인 **개별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플랫폼형 사업장은 예외 인정**

※ 매장 자체는 비영리 성격, 개별 농민·소상공인이 직접 수익을 취하는 경우여야 함

▶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매우 적어 사용이 불편한 지역에 소재**(가맹점 20개 미만 면지역)하고, **민간 농자재판매소 등 민간사업장과 경합하지 않는 농협 농자재판매소**

- **(개별기준)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 등록 거부**

< 공통기준 관련 참고 >

▶ **'업종' 기준에 비해 '매출' 기준이 합리적**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을 **매출액 기준** 정의, 업종 제한의 법적·합리적 기준 부족

▶ **매출액 30억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5% (자료 : 금융위원회)**

- **(분포)** 3억 이하 74.5%, 3억~5억 7.9%, 5억~10억 7.5%, 10억~30억 5.2%, **30억 초과 4.9%**

⇒ **대부분 소상공인은 영향X,** 대형병원 등 **취지에 맞지 않는 가맹점 배제**

▶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 활용하여 집행+**

- 가맹점 매출 정보는 국세청이 보유, 과세자료에 해당하여 광범위한 제공 곤란
-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신용카드사가 이미 보유, 집행력 확보** 이를 활용, **①3억 이하, ②3억~5억, ③5억~10억, ④10억~30억, ⑤30억 초과 5구간 분류**

⇒ **매출액 30억 초과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제한**

- 동 정보는 매출 산정 시 개인이나 법인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해 사업장 단위가 아닌 **'소유주(개인, 법인) 단위'로 매출액을 판단**

⇒ **매출액 30억 초과 여부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소유주 단위'로 판단**

※ (제외사례) 개별 사업장의 매출액은 30억 미만이지만, 실질적 소유주가 대기업인 직영 편의점 등은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맹점 제외 필요

▶ **매출액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가맹점 배제 조치 필요**

-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는 6개월 단위*(1월·7월)로 제공, **가맹점 갱신 주기**는 행정부담 등 고려하여 **6개월 또는 1년 중 지자체 자율 판단**

* (예시) '24.1월 제공되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은 '22.7월 ~ '23.6월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 매출 정보가 없는 **신규 가맹점은 우선 등록** 후 **사후적으로 매출액을 확인**하여 **가맹점 등록취소 등 조치**

※ 다만, **명백히 '연매출 30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대형마트 등) 지자체 판단 하에 **등록 유보 등 자율적 조치 권고**

3. 등록취소 : 부정유통 → 등록취소 → 재등록제한

○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법 §8)

*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경우

- 부정유통 방지, 경각심 부여를 위해 **부정유통 적발된 경우 적정 처분** 필요

○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4. 구매한도/보유한도 : 1인당 월 70만원 이내 / 최대 150만원

□ 지방자치단체장은 **적정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보유·환전한도 설정**

○ **(구매) 대량구매·고액결제를 억제하고,** 구매여력이 높은 **소수 주민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月 7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별 자율 결정

※ 대리구매 방지 등을 위해 **日 구매한도**를 설정하거나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年 구매한도**를 설정할 수도 있음(ex. 月 50만, 年300만)

- **명절 등**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까지 한시적 허용**(행안부 사전협의)

○ **(보유)**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여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5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별 자율 설정

○ **(환전)**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점 매출액 등 고려, **적정 수준의 환전한도 설정** 및 관리

5. 할인율 : 평시 10% 이내, 예외적인 경우 탄력적 적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하여 판매**할 수 있음(법 §15-②)

○ 지나친 선심성 지원 방지, 부정유통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등 고려, **평시 할인율은 10%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

- 다만, 범국가적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할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허용기준에 따라 **한시적 허용**(행안부 사전협의)

< 할인율 상향 허용기준 >

▶ **구체적 상황 고려, 차등 적용**
- 명절·행사 등 **소비지원** 차원인 경우 **1개월 이내, 최대 15% 이내** 범위에서 허용
-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목적인 경우, **기간·할인율 제한 없이 탄력적 허용**

▶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 **後캐시백형 할인**의 경우에만 허용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류형** 상품권, **先할인형** 상품권은 추가 할인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명절(설·추석)기간 소비지원 목적**인 경우 **先할인 상품권**도 **한시적 추가 할인 가능(지류형 상품권은 불가)**
-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목적인 경우 적시 대응을 위해 탄력적 대응

▶ 추가할인 기간 중 **철저한 부정유통 점검·모니터링 계획 수립**

○ **국비지원 발행물량**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할인율*** **준수**

* 인구감소지역 10%, 일반지자체 7%~10%내 자율, 불교부단체 10% 이하 자율

6. 유효기간, 환불 : 5년 이내, 가능한 환불 허용

□ 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법 §4-②)

○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소급적용 불가)

□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허용

○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가능, 정책 취지 등 고려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환불 실시**

7. 활성화 시책 : 타 정책과 연계, 수당 지급 등

□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지역 **공공 배달앱·쇼핑몰** 등 **다른 정책과 연계**하거나,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 활용을 통한 상품권 활성화 권장

○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 일부*, 시상금·포상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보수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한**(법 §13)

* 운영기관장은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40%를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2022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132호)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8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 대가 없는 **기부 행위 등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유의**

○ 상품권에 **지자체장의 직명, 성명 등을 기재할 경우 법령 위반 소지**

<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Ⅵ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관리

1. 부정유통 관리 : 발행형태 전환, 시스템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품권 발행형태 전환 등 부정유통 관리에 노력**

○ **(유통관리)** 건전유통을 위한 **발행형태 전환** 및 **관련 시스템 구축·도입**

-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폐지**하고, **後캐시백형 상품권을 운영**하는 등 **구조적으로 부정유통이 어려운 형태의 상품권 발행**

- 상품권 구매·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유통 관리에 노력

○ **(자정노력)** 지역별 상인회 등과 협조, 가맹점 대상 교육 및 계도 지속

2. 단속 : 일제단속·수시단속, 교육·시스템 활용 등

□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근절**

① 반기별 전국 지자체 일제단속

○ **(단속방식)** 지자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위반 유형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적극 활용

○ **(투입인력)**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지자체별 인구분포·발행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을 **투입**, 특히 특·광역시의 경우 자치구 인력을 포함하여 단속반을 편성

○ **(교육)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기초 담당자 대상 부정유통 단속 역량강화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이상거래시스템 활용법**' 및 '**부정유통 단속 유형**' 등을 숙지

○ **(현장관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 단속·조치내역**' 점검 및 현황관리를 실시하여 현장관리 철저

② 수시단속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 현장 점검 및 의심 가맹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실시

○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내용에 대한 수시 단속 실시

3. 처분 : 법령에 따른 처분

□ **단속 결과에 따른 적절한 처분** 실시

○ 단속결과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행·재정적 처분** 실시

⇒ 부정유통에 대한 **경각심 제고, 부정유통 근절**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 고의성, 반복성, 유통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안이 심각한 경우 수사의뢰

<참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유가증권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개요) 일부 지자체에서 아래 사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 그 결과를 공유하며 적절한 행정조치 당부

(사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상품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위법**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한 행위)

- (쟁점 및 판단기준) 핵심 쟁점은 '모바일 주유권'등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일반 상품권을 판매한 것이 '물품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상품권법상 물품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물품의 사전적 정의와 타법상 물품의 개념, 상품권법의 제정 이유 및 관련 정책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판단결과) 법 제정 이유 및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상품권법상 '물품'은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 역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물건 등**으로 봄이 타당하고, 채권의 성질을 가진 일반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역외 소비 가능성 및 대규모 점포에서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상품권법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Ⅶ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 및 운영

1. 국비지원 :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 지원 예산 등 신설

○ **(지원대상)**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 주민 생활권 고려 및 국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광역시의 區와 道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국비지원 無

○ **(지원내용)**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보조**

○ **(지원방식)**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도록 당초 전액 일반 할인비용으로 지원되었던 예산을 **①일반 할인비용(2,500억원), ②정책사업 할인비용(200억원), ③재난대응 할인비용(300억원)**으로 **나누어 지원**

❶ 일반 할인비용 지원(2,500억)

- **(할인율·국비지원율)** 지자체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자체별 차등 적용**

	일반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24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서울, 경기 성남·화성)
할인율	할인율 7~10%	할인율 10%	할인율 자율
국비 지원율	**국비지원율 2%** 지방비 부담 5~8%	**국비지원율 5%** 지방비 부담 5%	국비지원 없음

* 인구감소지역과 '24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지자체

**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를 기준으로 하되, 광역시의 자치구·군(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및 미발행 지자체(강원 양양군)는 제외

- **(지원규모)** **재정력**과 **균형발전 지원 필요성** 등을 **중점 고려**해 **국비지원 발행규모 결정(8.8조원**잠정**)**

기 준	주 요 내 용
발행수요	· 지자체가 제출한 발행수요가 동일 유형 대비 과도하게 많은 경우 상한 적용
재정력	· 지자체별 재정력에 따라 발행수요의 일정 비율을 차등 지원
균형발전	· 인구감소지역 등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추가 지원
발행형태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상품권 발행형태를 전환(지류형 축소, 후캐시백 전환)하는 지자체는 인센티브 제공

❷ 정책사업 할인비용 지원(200억)

- **(지역물가안정 지원)**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상품권 사용 시 추가 할인**(5% 이상)을 하는 **지자체**에 **할인비용 일부 지원**(국비 3%, 지방비 2% 이상)

• **일반자치단체** : 일반가맹점 7%(국 2%, 지 5%), **착한가격업소 12%(국 5%, 지 7%)**
• **인구감소지역** : 일반가맹점 10%(국 5%, 지 5%), **착한가격업소 15%(국 8%, 지 7%)**

- **(지역문제해결 지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 시 추가 할인**(5% 이상)하는 **지자체**에 **할인비용 일부 지원**(국비 2%, 지방비 3% 이상)

* 예시 : 산후조리원, 구도심 상권, 지역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시 캐시백 추가 지급

• **일반자치단체** : 일반가맹점 7%(국 2%, 지 5%), **지정 가맹점 12%(국 4%, 지 8%)**
• **인구감소지역** : 일반가맹점 10%(국 5%, 지 5%), **지정 가맹점 15%(국 7%, 지 8%)**

❸ 재난대응 할인비용 지원(300억)

- **재난 발생 등으로 소상공인 피해 발생 시,** 빠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 할인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추가 할인비용 지원**(전액 국비 지원)

* 예시 :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할인율 추가 지원 등

※ 정책사업 지원 및 위기대응 지원 예산은 정책사업 수요, 재난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상호 간 예산 조정 가능**

2. 집행 : 할인율 등 지침 준수, 각종 행정절차 이행

□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지원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집행**해야 함

○ 국비는 **할인판매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할인판매와 관계없는 발행비용, 홍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 불가

○ 지자체별 지정된 **할인율과 국비지원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용처, 구매한도 등 **본 사업지침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지원조건 위반 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재조치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집행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율에 따라 사업을 **e호조에서 각각 구조화**하여야 하며, 할인판매를 위한 **지방비**를 사업 단위에 맞게 **매칭**하여야 함

○ 국비는 지방자치단체별 국비지원 발행규모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자체는 **'24년 내 이를 모두 판매하여야 함**

- 지류형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판매되었을 때,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앱(app) 등을 통해 충전되었을 때 판매된 것으로 평가

○ 판매 후 가맹점 등에서 **환전되지 않은 상품권 예산은 차년도 이월 가능**

3. 정산

○ 특·광역시, 도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판매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을 담은 실적·정산보고서를 취합하여 검토 후 행안부에 제출

○ '23년 내 판매되지 않은 상품권, 지방비 매칭이 되지 않은 경우, 사용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정산과정에서 국비 환수 예정

Ⅷ 참고자료

참고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방자치단체명	지역사랑상품권 명칭:	
	소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별·금액별		발행예정 신청액	
종류	**권면금액별**	**매수**	**금액(천원)**
지류형			
소계	-	-	
카드형	-	-	
모바일	-	-	
총계	-	-	

직전사업연도 판매액(A)		**해당사업연도 발행 예정금액 총계(B)**		**(B/A) 비 율(%)**	
직전사업연도 발행예정금액(A)		**직전사업연도 발행 예정금액 중 미발행액(B)**		**(B/A) 비 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지역사랑상품권 견본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및 직전 반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수수료 없음

참고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신고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방자치단체명	지역사랑상품권 명칭:	
	소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 고 내 용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및 변경(예정)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신고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지역사랑상품권 견본(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	수수료 없음

참고 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

<table>
<tr><th>접수번호</th><th>접수일시</th><th>처리기간</th></tr>
<tr><td rowspan="3">지방자치단체명</td><td colspan="2">지역사랑상품권 명칭:</td></tr>
<tr><td>소관부서:</td><td>담당자:</td></tr>
<tr><td>전화번호:</td><td>전자우편주소:</td></tr>
<tr><td>발행폐지 연월일</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상품권 사용기한</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상품권 환불기한</td><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발행폐지 사유</td><td colspan="2"></td></tr>
<tr><td>상품권 환불기한 경과 후
소비자 보호방안
(필요시 별지 제출 가능)</td><td colspan="2"></td></tr>
</table>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폐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참고 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방자치단체명	지역사랑상품권 명칭:	
	소관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보고 내용

월	가맹점수	발행액										환전액									
		지류형(권면금액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카드형	모바일	총계	지류형(권면금액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카드형	모바일	총계
		5천원		1만원		3만원		소계	금액	금액	(천원)	5천원		1만원		3만원		소계	금액	금액	(천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년도 ○반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참고 5 구매한도 및 할인율 조정 협의서

지자체 및 지역사랑상품권 명칭		
발행형태 및 연간 발행예정액		
구매한도 및 할인율	평시	
	변경	
	변경기간	
	변경사유	
구매한도 및 할인율 변경기간 내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대책		